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업소개사업 폐업시 등록 사항 직권말소 등 >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7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시 등록 사항 직권말소 등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5일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 강화를 하고자 함.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제5항 및 제45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시 등록 사항 직권말소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자협회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u>

<신 설>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 직업안정법은 제35조에서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 공급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제35조를 위반하여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직업소개사업 등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되지 않은 폐업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등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의2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업자협회는 제34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자협회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사실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직업소개사업 등의 사업자협회 활동 지원을 매개로 직업소개사업 등의 발전을 진흥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필요하

고, 개정안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으며,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역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